

Full-text DB의 구축과 저작권 문제*

이 제 환** · 황 혜 선***

<목 차>

- | | |
|-------------------------------|--------------------------------|
| I. 서 론 | V. Full-text DB의 구축과
저작권 문제 |
| II.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와 가정 | VI. 결론 - 저작권법의 전망 |
| III. 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 Abstract |
| IV. DB의 저작권 보호 방안 | |

I. 서 론

정보유통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정보매체의 내용과 형태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Digitalization으로 축약되는 이 변화의 물결속에 수세기 동안 정보유통을 위한 매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오던 인쇄매체가 새로운 전자매체에게 그 위치를 급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관리기관이면서 동시에 정보유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도서관의 경우, 전자매체의 비중이 커져가고 점차 그 수용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서관조직의 기본 구조마저 변화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정보선진국에서는 상당수의 도서관들이 전자매체에 기반한 디지털 도서관 체제로의 시스템전환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專門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 이 연구는 1996년도 KORDIC 연구비에 의해서 지원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거나 시범운영중에 있다.

정보매체의 변화는 정보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보유통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저작권문제는 그와 같은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보매체를 통한 정보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고, 그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나 실천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문제와 관련한 학계나 현장의 대응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디지털도서관의 핵심이 되는 DB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선결과제가 되어야 하나, 관련 연구를 통한 적법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DB 구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와 가정을 검토하고 최근 정보기술과 매체의 변화가 이러한 원칙과 가정에 어떠한 긴장을 초래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도서관과 같은 정보유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full-text DB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저작권법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요소에 있어서 제기되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검토하며, 다음, full-text DB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저작권법이 새로운 정보기술과 매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에 대해 전망한다.

II.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와 가정

1.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는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한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법률사회적 의미에서 저작권법은 정보의 세계와 경제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통하여 정보유통을 규정하는 법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제도는 정보의 생산자가 생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담보받음으로써 지적 예술적 창작 활동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생산을 촉진시켜 사회의 지적 문화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저작권제도는 또한 정보의 생산자인 저작자, 정보의 배포자인 출판사, 그리고 정보의 이용자인 대중 사이의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법적인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첫째, 지적·예술적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The Statute of Anne)에서 최초의 법적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앤 여왕법은 본래 저작물의 복제권(copy-right)에 관한 법률로서 당시 영국의 출판업에 있어서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그후 지식의 증대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18세기의 계몽주의적 이상과 로크의 자연법사상이 이에 통합되어 저자의 권리로서의 저작권 개념이 전 유럽에서 발달해 왔다. 이처럼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는 제도, 즉 저작권제도는 지식의 증대를 통한 사회적 발전이라는 이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법적 제도'로 고착되어 왔다.

영국의 저작권법을 계승한 미국의 저작권법은 많은 나라의 저작권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저작권법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은 헌법 구절에 두고 있다.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예(技藝)를 향상시킬 권한을 의회가 갖는다(미헌법 1조, 8장, 8절)." 이 조항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목적은 사회에 유용한 기예의 진작이며 이 목적을 위해 부여되는 저작권은 의회

가 정하는대로 그 한계와 범위가 정해지는 규정적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저작권법에서 목표로 했던 정보와 지식의 증대라는 사회적 이상은 그 후 저작권법의 발달과정에서 저작자의 권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퇴색해 갔다. 즉 저작자의 권리가 저작권의 요체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저작재산권(저작자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에 의한 정보의 이용과 저작자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은 점차적으로 저작자의 재산권 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발달사를 추적해 보면, 한정적이고 규정적인 권리로서 출발한 저작권이 ‘저작자는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법 사상과 통합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권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 저작권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Patterson, 1967).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원래의 규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함으로써 완전한 자연권으로서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예로는, ‘베른협정’과 이후의 대부분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간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정기간 이후 저작권이 만료 되면 해당 저작물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처럼, 오늘날의 저작권은 그 한계와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인 자연권으로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 권리가 부여되는 규정적 권리로서의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또다른 예는 공정사용(fair use)의 원칙에서 발견된다. 공정사용은 법이 정하는 조건과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의 정보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2. 저작권법과 공정사용의 원칙

저작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 조사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교육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그리고 저자와 출처를 밝힌 저작물의 인용 등은 ‘공정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제23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제25조), 사적 사용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제27조),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제28조)를 공정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사용의 범위와 한계는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 정해 질 수 있는데,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으로 공정사용의 여부를 결정한다(미저작권법 제107조) :

- ① 저작물의 사용 목적 - 즉 사용 목적이 영리적인가 혹은 비영리적인가?
- ② 저작물의 성격
- ③ 전체 저작물 중에서 이용되는 부분의 양과 정도.
- ④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성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이 비평 논평 뉴스보도 학문적 연구 교육적 목적 등에 이용되어 원 저작물에 부가적 가치가 부여된다면 ‘생산적인 이용’이 되고, 이러한 이용을 통해 공공적 이익을 증진시키므로 ‘공정사용’으로 고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적인 이용이 아니더라도 공정사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가령, 저작물의 사진복사가 단순히 미래사용(time-shifting)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공정사용에 해당된다. 특히, 공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적 정보에 관해서는 공정사용이 적용되는 범위가 일반 창작물보다 넓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례별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사용에 관한 미국 법원의 한 판례(Basic Books Inc. 대 Kinko's Graphic Corp.)는 공정사용의 여부는 위의 4가지 중 1개의 요인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4가지의 요인 모두가

통합적으로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chockmel, 1996). 구체적으로, 학술적 연구나 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저작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정도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성을 해치지 않아야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위의 판결문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정사용에 관한 대표적인 지침서에서도 공정사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여 저작물의 공정사용원칙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가령, 1975년 미국의 저작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Copyright Law Revision)에서 제시한 공정사용에 관한 지침과 ALA의 1982 Model Policy에서의 지침은 공정사용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단체인 ALA는 교사, 작가, 대학출판업자들로 구성된 上記 특별위원회보다 공정사용의 범위를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다(Schockmel, 1996).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저작권법에 있어서 ‘공정사용의 원칙’은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정보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공정사용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일부 출판사들은 공정사용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법적으로 공정사용에 해당되는 저작물의 사용조차 불허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즉, 저작물의 어떤 부분도 저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 그리고 저작권료 지불없이 복제될 수 없다는 통고를 함으로써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사용을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Snyder, et al. 1994).

미국 저작권법에서 공정사용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들은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76)에서 성문화 되었다. 그러나 저작권법 학자들은 공정사용에 관한 조항의 추가가,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의 공유영역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Patterson, 1987; Litman, 1990; Lang, 1981).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1976년 개정저작권법 이전에는 공중의 저작물 사용은 그 사용이 공정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

되었으며, 단지,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만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다시 말해, 복제권이나 배포권과 같은 저작권의 이용에 있어서만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했었다. 그러나 1976년의 개정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도 그 이용이 공정한가의 여부를 묻게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중의 권리는 이전의 저작권법보다 더욱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Patterson, 1987).

Ⅲ. 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저작권법은 새로운 정보매체의 개발과 보급이 확산되면서 법해석 및 법적용의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는 기존의 저작권법을 이루는 요소들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저작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사용에 관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령, 복제가 용이한데서 오는 저작권보호의 어려움, 저작물성을 결정짓는 요소의 모호함, 저자와 관련된 제문제(저자의 개념, 변이물의 저자, 복수저자의 권리 등), 공정사용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짓는 기준, 저작물의 변형에 의해 야기되는 저작권문제 등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정보매체의 변화에 비추어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著作性에 대한 정의

저작권의 개념은 인쇄출판이 시작된 시기에 처음으로 고안된 이래 수세기 동안 기술 발달과 함께 변화해 왔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의 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18세기 이후 인쇄출판 뿐만 아니라 그 후 발명된 기술과 매체들을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포용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혀왔다. 1790년 최초로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790)에서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저작물을 지도와 도표, 그리고 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Warner, 1993). 그 후 음반, 영화,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DB 등이 저작권의 대상으로서 포함되어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정보선진국들의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그리고 세계저작권조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문학 학문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 학문 예술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과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는 고안 등과 같은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표현물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창작성'이다. 즉,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얼마나 독자적(original)인가와 창조적(creative)인가의 기준이 저작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저작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창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 됨을 입증하는 사례는 미국의 Feist Publications사와 Rural Telephone Service사 사이의 소송사건의 판례를 통해 제공된다. 이 사건에서는, 전화번호부의 저작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전화번호부의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입되었다 할지라도 전화번호의 선택과 이들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한 것이 창작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성이 인

정될 수 없다고 판결된 바 있다(Gordon, 1992).

그러나 창작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창작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이 이러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령, 한국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법령, 법원의 판결과 결정, 행정절차에 의한 의결과 결정, 시사보도, 공개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저작물은 그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공중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저작권법 제7조).

저작성은 또한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 인쇄물, 사진, 영상, 조형물, 음반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형태가 있는 저작물 뿐만 아니라 CD ROM이나 DB와 같은 디지털 기호로 이루어진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著作性을 결정하는 데는 '생각(ideas)이 표현(express)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는 생각이 어떤 형태로든 고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요건에서 생각과 표현은 이분되는데, 사상 관념 절차 방법 원칙과 같은 생각(ideas) 자체로는 저작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표현한 것이라야 저작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이다. 가령, DB에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였다가 이를 컴퓨터의 CRT 화면을 통해 보는 경우, 비록 종래의 인쇄매체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고착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의 어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저작성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저작권법에 있어서 저작성을 결정하는 기준들은 새로운 정보매체에도 탄력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저작권법의 융통성은 저작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 어떠한 형태의 저작물이라도 보호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근 DB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정보매체의 저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기존의 저작권법만으로도 이들의 저작권을 보

호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이다. DB와 Multi-media의 경우 표현되는 정보의 형태에 관계없이 백과사전과 같은 편집저작물(compilation)로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다만 이들을 구축할 때 그 구성요소의 선택, 정리,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저작성의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기존의 저작권법은 저작성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저작물의 유통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연, 음반제작,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저작물의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독창성이나 고착된 표현과 같은 요인의 결여로 인해 저작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인접권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가령, 어문저작물, 음악,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와 같이 매체의 복합성으로 인해 저작성이 애매한 경우, 이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전영표, 1995).

즉, 방송사업자나 유성방송 사업자에게 자사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방송할 권리를 부여했듯이 멀티미디어 제작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멀티미디어 제작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를 방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혹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편집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멀티미디어 구성상의 독창성 정도에 따라 저작성이 판단되고,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보호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전망이다.

2. 著者の 문제 (authorship)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자의 권리이다. 저자는 지적/창조적 노력을 기울여 저작물을 생산하고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계적으로 생성되는 저작물의 저자를 구별해 내는 것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기술은 저작권법에서의 저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2.1 동일성유지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정보의 유통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자정보가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명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변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저작물의 변형이 기술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저작물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저작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는 저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즉 저작인격권 중에서 특히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매체의 특성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일반 이용자가 저작물을 가공 변경 합성함으로써 저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허락할 때 저자는 해당 저작물의 개작이 빈번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도 묵시적으로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 저작물의 디지털화 이후에는 저작물의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저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여 금전적 대가를 취하게 된다면, 이는 저작재

산권을 2중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자가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진희, 1995).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을 저자의 허락없이 변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자의 저작인격권과 2차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2.2 저자의 주체

한편,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산과 함께 하나의 지적 예술적 저작물을 생성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공동 저작물이 생산될 경우 누가 저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작업에 참가한 모두가 저자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가령,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써가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했다면, 그리고 그 소설을 다시 책으로 출판하려 한다면 누구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저자 모두를 확인하고 역추적해서 이용허락을 받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이러한 경우,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이렇게 생성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어떻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초 미국도서관계와 법조계를 논란속으로 몰아 넣었던 OCLC에 의한 OCLC DB에 대한 저작권 신청은 전형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회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된 OCLC DB의 저작권을 편집자인 OCLC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이제환, 1994).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적으로 생성된 저작물의 경우도 저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란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가령, 작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성되는 음악, 자동번역, 자동초록, 자동요약 등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을 생성할 경우, 저자가 기계인지, 프로그램 제작자인지,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자인지를 명확하게 결정짓기가 힘들어진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혹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는 '기계적으로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됨을 의미한다.

미국의 CONTU 보고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생성된 저작물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즉,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성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컴퓨터는 스스로 판단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생성된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견해, 그리고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얼마나 개입되었는가에 따라 이 문제는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정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3. 발행에 관한 문제

저작권법에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매체의 출현은 이와 같은 출판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가령,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온라인 DB에 입력하여 저장하는 것을 발행으로 볼 수 있는가, 혹은 이용자가 컴퓨터 화면에 저작물을 출력시키는 시점에서 발행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판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발행시기를 정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와 출판권을 규정할 때이다. 즉, 위의 예에서 발행시점이 저작물의 입력시기인지 혹은 최초의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출력시키는 시점인지, 아니면, 디스켓에 다운로드하는 시점인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수시로 업데이트(update)되는 DB의 경우 DB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각기 다른 발행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출판권의 규정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에 규정된 배타적인 출판권이 문
서나 도화가 아닌 전자출판에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출판권을 취득한 출판사가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할 때,
저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도 이미 취득한 출판권으로 디지털 형태의 저작
물을 출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저작권상의 출판권의 개념에 의하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판권의 범위가 전자출판에까지 미치도록 넓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
작물을 CD ROM 형태로 제작하거나 DB에 입력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보급
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출판권 범위 밖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정상조,
1994). 이처럼 현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의 개념은 전자출판
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게 정의되어 있어서, 만약 전자출판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판권 계약에 전자출판에 대한 특별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자매체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출판과 출판권에 대한 정의
도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복제의 용이함

인쇄매체가 대상이었던 상황에서의 저작권은 복제권과 배포권을 주로 의미
했으며, 따라서 저자가 작성한 원고를 인쇄하여 다수로 복제하여 배포할 권
리가 저작재산권의 중심개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인쇄매체가 저작물 유통의
주요 수단이었을 때는 복제가 기술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복제권 중심의 저작
권을 실현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사진복사(photocopying)기술이 발
달하면서 저작물 복제의 용이성이 또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저작
권법상 '공정사용의 원칙'에 의해 허락되는 범위 이상의 복제가 무단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잦았으며,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에 관한 공정사용의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원칙적으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보관,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가 구입이나 구독을 대신할 정도가 아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즉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공정사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에 드는 노동과 비용은 감소되었다. 특히, 디지털 정보기술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여 복제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거의 제로상태로 만들었다. 저작권은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부여되는데, 복제의 기술적 용이성은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전자정보시스템에서는 일반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자정보의 복제에 해당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 전자장치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즉 저작물을 일시적 혹은 고정적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것은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연적인 이용행태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이러한 종류의 복제를 비롯하여 온라인 정보의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물의 복제를 통제하고 제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전자정보에 대한 복제의 기술적 용이성과 이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은 복제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개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5. 공정사용에 관한 문제

사진복사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의 한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의 해석에 많은 이견이 있어왔다. 디지털 정보의 다운로드와 복제에 관해서도 공정사용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공정사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진복제물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보다 더욱 모호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저작권법의 공

정사용 원칙은 디지털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디지털 정보의 양에 관하여는 어떠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의 복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1인 1부에 한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한 사적사용이 허락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저작물로 구성된 full-text DB와 같은 편집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이란 DB를 구성하고 있는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DB의 공정사용의 범위를 좁게 정하여 full-text DB의 경우 全文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는데 실질적으로는 full-text DB의 공정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1인 1부의 규정도 디지털 정보에 있어서는 단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홍재현, 1993).

6. 원저작자의 권리

전자정보매체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은 다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인쇄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이 다시 디지털 형태로 DB를 통해 복제, 배포되고 이는 다시 CD ROM과 같은 매체에 수록되어 배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2중 3중으로 저작권의 이용이 이루어진 저작물을 다시 이용할 때에, 이용자는 최초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저작권법에 비추어 보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라도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가 원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이용이 2중, 3중, 4중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편집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는 원저작자로부터 얻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의 이러한 요소들은 DB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디지털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법정허락과 강제허락과 같은 의제(擬制)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저작물의 사회적 공익성을 중시하여 저작자의 의사에 반한다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금지급이나 공탁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이다. DB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복합적인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미 출판되어 시판된 적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된 판매용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다시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허락제도가 적용된다(한국저작권법 제50조). 이러한 강제허락제도를 음반저작물 뿐 아니라 어문저작물에까지 확대하여 DB와 멀티미디어에서의 저작물 다중이용을 용이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관련학자의 일부에 의해서 현재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정상조, 1995).

IV. DB의 저작권 보호 방안

DB는 일반적으로 편집저작물로 간주되어 인쇄매체의 편집저작물과 같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즉, 인쇄매체의 편집저작물에서와 마찬가지로 DB는 수록되는 원저작물의 선택 정리 배열 등과 관련하여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저작성을 지니게 된다. 이때 DB에 대한 저작권은 보통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DB에 대한 저작권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이는 원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복제 뿐만 아니라 DB에 무단 접속하여 DB를 이용하거나 DB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위반이 됨을 의미한다. 한국의 1994년 개정저작권법에서도 DB를 편집저작물로서 명시함으로써 DB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한국저작권법 제6조). 따라서, '공정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DB에 무단 접속하여 DB를 이용하거나 DB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전자매체의 특성상 DB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복제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하고 공정사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또한 애매한 경우가 많아, DB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DB의 제작자나 vendor는 자기들이 구축한 DB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이용되는 방법 중에는 심지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경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또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와 접근방식을 취하여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저작물의 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DB의 보호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1. 특별법적 보호를 위한 움직임

DB의 구축은 많은 투자를 요하므로 구축된 DB의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 없이는 DB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DB의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법외에 따로 DB 보호법을 입법하거나 DB에 관한 특별법적(sui generis) 보호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DB를 편집저작물로 보면서 저작권 보호를 하여왔으나, 1991년 Feist Publications, Inc. vs.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재판에서는 DB의 구축에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보다는 DB를 구성하는 요소의 선택 정리 배열에 있어서의 창작성을 더 중시하여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창작성이 DB에 대한 저작권 부여의 주요 조건으로 등장하였으나, 현존하는 DB의 대다수가 이러한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례에 따라 저작권법이 대다수의 DB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투자에 의해 구축된 DB로부터의 무단 인출(unauthorized extraction) 및 무단복제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DB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DB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고,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DB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에 특별법을 추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Rosler, 1995).

한편, 일본의 개정저작권법도 DB를 편집저작물과 구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보호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DB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DB를 구성하는 소재에 대하여 저작권보호와 함께 특별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침을 갖고 있다. 즉 DB를 구성하는 소재는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과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로 나뉘는데 저작권이 없는 소재라 할지라도 DB에 수록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작권 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DB 자료들도 15년 동안 법적 보호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DB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UNESCO의 주도 아래 1980년과 1982년에 열린 '컴퓨터 사용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문제에 관한 정부 전문가위원회'에서 채택한 '저작물의 이용 및 창작을 위한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고'에서는, DB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하나로 보면서 DB의 저작권에는: ① 저작자의 번역, 번안 그밖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을 허락하는 권리; ② 수록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 ③ 직접전달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하는 권리; 그리고 ④ 저작자인격권이 최소한의 권리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DB의 보호는 최근 WIPO의 주관아래 제네바

에서 열린 베른조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¹⁾ 미국과 EU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창작성이 없는 DB의 법적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수정 없이 타결된다면 DB는 창작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 '복제금지' 경고문의 부착

DB의 무단이용이나 복제를 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DB 제작자나 vendor가 자신들의 DB에 수록된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통고문을 붙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경고문들의 예를 보여준다 :

“이 DB의 어떤 부분도 사전의 서면허락 없이는 인쇄물이나 기계가독형, 또는 다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No part of the information in this database may be reproduced in hard copy, machine-readable or other form without advance written permission)”.

“이 DB에 수록된 데이터는 공급자의 허가 없이는 인쇄물이나 기계가독 형태로 복제될 수 없다(Data may not be duplicated in hard copy or machine-readable form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database supplier)”.

“여기에 제공되는 자료나 자료의 사본을 대출, 재판매, 대여하거나 제3자나 제3의 기관에 증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됨(The use of materials supplied hereunder or any copies thereof for the purpose of loan, resale, rental use, or gift to any third person, organization or corporation is strictly forbidden)”.

이와 같은 경고문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정사용’ 조차 금지함

1) WIPO는 7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열어 미국, EU의 베른 조약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미국은 베른 조약의 개정을 위해 WIPO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회의를 1996년 하반기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1996년 12월 2일 부터 제네바에서 베른조약개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기본권리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고문을 포함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되어 엄밀하게 말해 저작권법에 대한 위반이 된다. 더욱이 DB 공급자가 통고문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고문을 부착하는 이유는, 일반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가능한 불법적인 복제행위를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3. 계약과 이용허락

DB 공급자들은 이용자의 불법적인 복제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에 적용되는 이른바 “포장재 계약(shrink-wrap contract)”을 활용하기도 한다. 즉, 소비자가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이나 레이블을 뜯으면 그 상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지게 되는 것과 유사한 계약관계를 설정하여 정보구매자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관해 일괄적인 계약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출판사나 정보배포자가 그들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최근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Bennett, 1993). 이와 같은 이용허락제(license)는 전자정보상품(CD-ROM, 온라인 서지정보, 온라인 전문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저작물을 일반 상품으로서 정의하여 저작권법이 아닌 계약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온라인시스템의 이용허락은 보통 개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에 대한 이용료가 산정되어 계좌를 통해 징수된다. 이러한 과정은, 저작물의 이용자와 소유자를 직접 연결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모든 종류의 접근과 이용행위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게 함으로써 공정사용에 해당되는 정보의 이용에까지도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

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복제의 자유로운 허용

저작물의 복제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제한없이 배포하는 전자저널 등이 출현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저작물의 유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많은 학술저작물의 경우,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학문분야에서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논리를 전파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전자저널의 확대와 함께 저작물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출판을 위해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양도하는 관행이 그동안 지배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상업출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출판사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작권의 행사가 상업출판사가 아닌 저자나 연구 교육을 위한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저작권의 독점이 상당히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학술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들은 이와 같은 추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 저작권의 집중관리

현재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파악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인쇄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혹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였으나, DB와 같은 복합적인 전자 저작물의 경우는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 특히 수많은 저작물들이 구성요소가 되는 full-text DB를 구축하고자 할 때,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파악하여 그들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DB의 크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하나의 저작물이 인쇄본과 DB 그리고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작되어 다중으로 이용되는 경우, 저작자를 일일이 추적하여 허락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저작물이 해외 저자에 의한 것일 경우, 전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해외의 저작권자를 파악하여 그들과 일일이 협상을 전개한다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물의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저작물과 저작자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 관리기관에서는 저작권 계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 즉, 저작권 이용의 범위, 저작권 이용요금의 산정, 권리의 소재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저작물의 집중관리제도는 저작물의 이용이 전자매체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자정보매체를 이용한 저작물 복제의 용이성과 함께 전자정보의 변형·합성의 용이성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저작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문제들을 협상하기 위해 협력단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게다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전자

매체는 전통적인 매체들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현재 매체별로 조직되어 있는 저작권협회(e.g., 음악저작권협회)의 일원화와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²⁾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입력 복제 조작 등이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보의 복제와 복제매체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수립되어야 한다.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입력 및 출력, 그리고 정보의 변환 및 조작에 있어서 복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자정보의 복제에 있어서 사진복제의 복사기에 해당되는 기기는 무엇인가?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관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유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작자의 복제권 집중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의문시된다. 그러나 현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자 개인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관리대상을 사진 복사뿐 아니라 인쇄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나 디지털 정보의 복제에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V. Full-text DB의 구축과 저작권

1.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Full-text DB를 구성하는 소재는 저작권이 있는 것과 저작권이 없는 것

- 2) 저작물의 집중관리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정보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가령, 미국의 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같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서는 복사기 제조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하거나, 대량의 사진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나 기업체 혹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저작물의 복사량을 측정하여 그에 준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으로 나누어진다.³⁾ 저작권이 있는 소재를 DB에 입력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이용허락을 얻으려면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full-text DB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이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가령,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저작권 이용허락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저작권이 개인 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이용과 저작권료 지불에 관한 계약이 저자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의 지불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 개별 저자들로부터 일일이 저작권 이용에 관한 허락을 얻는 과정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full-text DB 제작자나 vendor의 경우는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은 아예 수록을 배제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인쇄출판물을 full-text DB化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저작권 이용허락의 번거로움 때문에 누락된 논문이나 기사가 많아 DB의 완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목격된다. 반면에 출판사와 개인 저작권자 모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DB에 수록함으로써 DB의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도 문제의 소지는

3)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정의되며 저작물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 ② 음악저작물(樂曲 및 악곡을 수반하는 가사) :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④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⑦ 영상저작물 :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 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소재는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것, 즉 저작물이 아닌 것이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전화번호부, 열차시간표, 음식점 메뉴 등은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익의 관점에서 공중에게 널리 공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다음이 이에 해당한다 : ① 법령 :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자 행정심판결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견, 결정 등 : ④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② ③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⑥ 공개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演說).

잔존한다. 이 경우 다양한 제약행위를 위한 복잡한 서류처리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며 따라서 DB의 신속성은 손상되게 된다. 게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지 못한 저작물은 DB에 수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DB의 완성도도 역시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full-text DB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큰 문제로 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full-text DB들의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가령, 법률분야의 full-text DB인 미국의 LEXIS의 경우는 학술잡지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전자출판에 관계되는 저작권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 호에 실린 기사들을 전부 DB에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분야의 또 다른 full-text DB인 Westlaw의 경우는 원저작물의 DB 입력에 앞서 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고 있다. 이러한 Westlaw의 저작권정책은 자료제공에 있어서의 시간지체를 야기시키며 저작권과 관련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온라인 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법률정보의 이용자는 Westlaw보다 LEXIS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Ebbingjous, 1996). 그러나 LEXIS의 경우도 원저작물의 저작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다.

또한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원저자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주장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full-text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NWU (National Writers Union), the Authors Guild, the American Society of Journalists and Authors 등과 같은 저작자 단체들이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직접 징수하기 위하여 CCC를 본뜬 clearing house의 설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NWU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NWU는 full-text DB에 수록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들을 파악하고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모니터하고 있다. NWU는 또한 DB 업체와 온라인 vendor가 전자 복제된 저작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에 비하여 저작권료의 지급이 미미함을 지적 하면서 이들 DB업체와 온라인 vendor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 NWU는 저작자가 출판계약을 할 때 출판사가 저작물을 일회만 출판할 수 있게 - 즉 출판계약의 영향력이 향후 디지털 저작물에는 미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Tenopir, 1996).

이상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전자정보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자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저작권보호와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협력단체의 설립과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ull-text DB의 구축을 위해 원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출판사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들과의 협상과 합의가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초의 출판사가 아니라 저자에게 있으므로, full-text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저작권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저작권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full-text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참고가 될만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쇄매체로 이미 출판된 저작물 :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주로 출판사이거나 개인 저작자이다. 출판사로부터 DB 입력을 위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때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 개인 저작자에게서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해당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나 용익단체, 혹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저작물의 DB 입력과 이용을 위한 저작권 허락은 저작권 집중관리센터인 CCC (Copyright Clearing Center)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저작자들의 용익단체인 NWU (National Writers Union)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② 디지털 저작물 :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나 개인 저작권자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CD ROM이나 온라인 형태로 다른 DB에 수록되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full-text DB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二重의 저작권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대상 DB를 구성하고 있는 原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대상 DB의 저작권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2차저작물의 작성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1회에 한해서만 原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 입력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경우 대상 DB에 수록된 저작물을 새로운 DB에 입력할 권리인 2차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DB에 대한 저작권은 DB의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대상 DB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여 새로운 DB에 입력하고자 할 때는 대상 DB의 소유자로부터 2차저작물 작성에 관한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한다.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미흡한 면이 많기 때문에, 많은 DB 공급자들은 계약법에 의해 DB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제재함으로써 DB를 보호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저작권법에서 허용된 저작물의 이용까지 금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소제가 되는 原저작물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나 DB에는 계약법이 적용되는 二重 상황하에서, DB 이용계약에 의해 설정된 조건 때문에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원저작물의 검색 및 이용이 제한되는 모순이 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DB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복제하여 새로운 DB를 구축할 때 대상 DB 제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원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full-text DB를 구축할 때 이러한 저작권문제의 이중적 구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대안

Full-text DB의 구축時에,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DB에 입력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이들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이므로 이 문제는 full-text DB의 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미국을 비롯한 정보선진국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때 개인 저작자를 일일이 통하지 않고서도 출판사를 비롯하여 저작권 집중관리센터나 저작자들의 용익단체를 통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국내의 경우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결여로 인하여 개별 저작권자를 일일이 파악하여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DB 구축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즉,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거의 불가능한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법정허락제도(legal licence)와 같은 의제(擬制)를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법정허락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만 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자나 그 거소(厝所)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정허락을 요청할 수 있다(한국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권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legal licence)는 그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DB 구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법정허락

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료의 징수 및 배분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저작물과 저작권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자에 대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강제하는 강제허락제(compulsory licence)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와(한국저작권법 제48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된 판매용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제50조)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 full-text DB에 수록될 저작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DB 및 멀티미디어 제작자를 보호하고 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현재 방송사업자와 음반 제작업자에게만 허용되는 강제허락제를 확대하여 어문저작물의 발행자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베른조약 개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에서는 음악저작물 녹음을 위한 강제허락제도의 폐지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어 개정안이 타결된다면 어문저작물에 대한 강제허락제의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VI. 결 론 - 저작권법의 전망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발달해 온 저작권은 수 세기동안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적응해 왔으며, 지식의 증대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은 저작권 개념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제권과 배포권을 중심으로 한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복제와 배포에

관한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역할에 대한 재고를 요구받고 있다. 정보의 복제 배포에 관한 모든 새로운 기술은 그 크기와 정도에 있어서 개인의 저작권 이용에 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저작권법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시킨다. 저작권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한 바람직한가? 저작권 보호의 방안들이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중의 정보이용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저작권의 보호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동등.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자나 저작권자로부터 반드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저자가 사전에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고 허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의 생산 배포의 과정에서 인쇄와 배포를 구분하는 명확한 단계가 점차 없어지면서 복제권이나 배포권과 같은 권리의 실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저작권법의 대응은 미흡하다.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들은 저작권 개념의 변경과 저작권법 외적인 시도를 요구한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하나의 방안은 법정허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법으로 제한하여(즉, 적절한 이용료를 지급하면 저작물 사용이 허락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저자의 배타적 권리를 법정허락에서 정하는 제한적인 권리로 대체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저자에게 일정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저작료 징수협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회들은 저작물 사용을 통제하고 저작권료 부과에 있어서 개인 저작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저작자가 이 협회에 가입되어야 하며 저작권료의 지급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야기시키는 저작권문제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저작권개념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종래의 복제권 중심의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작물의 적극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 일반이용허락제도(universal licensing system)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Drucker는 말한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인쇄된 문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아마도 몇 십년 후에는 전송과 인쇄사이의 구분은 사라질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일반이용허락제도(universal licensing system)일 것이다. 즉, 누구나 가입자(subscriber)가 되어서 발행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스템일 것이다”(Drucker, 1993).

이와 같은 주장은 저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저작권개념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에 관한 논의들은 저자의 권리로서의 저작권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중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권리 및 이용 증진을 위한 방안을 소홀히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기술은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공중의 저작물이용을 감시하고 공정사용의 여지를 없애므로써 공중의 정보이용권을 축소한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중의 정보이용진작이라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는 기술적 이유에서 더 이상 실현되기가 곤란하며, 비현실적인 법 아래서의 불법적인 저작물사용의 만연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일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소득원의 확보를 위하여 저작권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정보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자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이미 지적재산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조

약의 개정과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도아래 전개되고 있는 베른조약의 개정 노력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완화하기보다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새로운 매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저작권 강화의 경향은 베른조약 개정안이 큰 수정 없이 타결된다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저작권법이 본래 허용하고 있던 공중의 정보이용권은 이에 따라 축소되어 정보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매체는 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어렵게 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모든 저작물의 이용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저작권 보호의 기술적 방안들은 공정사용을 무시하는 한편 정보이용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와 공중의 정보이용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었던 저작권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응하여 개정을 거듭하는 사이 저작권보호의 강화로 점차 기울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을 형성해 왔던 두 개의 기본 철학과 원칙 중에서, 공중의 정보이용권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하고 저작재산권으로서의 개념이 지배적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저작권자와 정보의 배포자 및 이용자 사이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문환. 1990. “데이터베이스의 법률문제.” 저작권 11 : 4-13.
 김진희. 1995.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저작권.” 제간저작권 1995년 봄 : 26-33.
 왕윤중. 1993.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두영. 1992. “출판물의 사진복사와 복제권 관리기구의 동향.” 제간저작권 1992년 봄 : 29-34.
 이순자. 1984. “컴퓨터와 연관된 지적소유권보호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보관리학회지 1(1) : 9-24
 이제환. 1994. “서지DB의 저작권문제가 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 도서

- 관학논집 21 : 325-361.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
의 최종보고서(CONTU). 저작권관계자료집 14. 최경수 번역. 서울: 저
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전영표. 199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계간저작권* 1995년 여름 :
65-79.
- 정상조. 1992. “전자책의 출현과 저작권.” *계간저작권* 1992년 겨울 : 79-88.
- , 1995. “전자출판물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1994년 가
을 : 40-55.
- 한승현. 1992.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 서울 : 나눔.
- 홍재현. 1993. “서지 유틸리티 DB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
리학회지* 10(2) : 111-143.
- 황혜선. 1993.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연원.” *도서관학논집* 20 : 455-470.
- Beck, H. 1991.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ilations and Databases
After Feist.” *The Computer Lawyer* 8(7) : 1-9.
- Benko, R. 1987.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ssues and
Controversies*. Washington D. 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Bennet, S. 1993. “Copyright and Innovation in Electronic Publishing : A
Commentar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9(2) : 87-91.
- CONTU'S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1980.(Copyright, Congress
and Technology : The Public Record Volume 5). ORYX Press.
- Daubert, T. 1992. “Note : Copyright, Potential Markets, and the User
Interface : Defining the Scope of the Limited Monopol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5(2) : 355-377.
- Duggan, M. 1991. “Copyright of Electronic Information : Issues and
Question.” *Online* 15(3) : 20-26.
- Goldstein, P. 1992. “Copyright”,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5(2) :
79-91.
- Gordon, W. 1992. “Reality as artifact : From Feist to Fair Us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5(2) : 93-106.
- Harris, M. & Hannah, S. 1994. *Into the Future : The Found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Era*. Norwood, NJ : Ablex

- Hwang, Hyesun. 1995. *Changing Perception of Info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 Lang, D. 1981. "Recognizing the Public Doma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44 : 147-172.
- Library Hi Tech News*. "CARL Corporation and National Writers Union Team Up for Royalty System at UnCover Article Delivery Service." Jul-Aug 1995, 1-2.
- Lineman, J. 1989. "Copyright Legisl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Oregon Law Review* 68(2) : 275-361.
- Nasri, W. 1986. "Copyright : A Lasting Question for Manager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7(4) : 83-98.
- Pagell, R. 1990. "International Copyright : Users and abusers." Online Information 90 :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Online Meeting*. London, 11-13 Dec., 1990.
- Patterson, L. 1992. "Understanding Fair Us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5(2) : 249-266.
- Ploman, E. & et al. 1980. *Copyright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Shuman, B. & et al. 1990. "Copyright Issues : The Law and Library Interests." *Library & Archival Security* 10(2) : 103-115.
- Tenopir, C. 1996. "Online Copyright Dilemma." *Library Journal* (June 1) 1996 : 42-45.
- Warner, J. 1993. "Writing and Literary Work in Copyright : A Binational and 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4(6) : 307-321.
- Wolfe, M. 1982. "Copyright and Machine Readable Databases." *Online* (July) 1082 : 52-55.

Copyright Issues in Building a Full-text DB

Jae-whoan Lee* · Hye-sun Hwang**

〈Abstract〉

With a rapid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media,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the traditional copyright laws have been widely challenged. This study explores how we could deal with the copyright issues in such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In details, this study discusses (1) the basic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copyright law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2) how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should be changed to adjust itself into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opyright-related problems which might be confronted when the building and use of a full-text DB is attempted. Finally suggested are the legal methods to resolve such problem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NU.

** Lecturer, Dep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NU.